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행정력 과다 소요로 사업의 직접 추진이 어려움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5)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3. 1. 환경부)

다. 위탁기간 : 2024년 ~ 2025년 [2년간]

라. 사업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무허가 제외)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2024년 기준) ※ 2025년 국비 확보에 따라 변동

1)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232동(주택 200동, 비주택 32동), 지붕개량 19동

2) 소요예산 : 996,120천원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천원)

총 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계	주택	비주택	
996,120	876,800	704,000	172,800	119,320

3) 위탁수수료 : 사업비의 8% 이내(최종 정산사업비에 따라 변동됨)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심사

3)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사. 위탁사무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공개경쟁 입찰(구미시 및 인근 지역 업체 우선 선정)

- 슬레이트 면적 조사 실시

(위탁기관, 철거업체, 건축소유주 3자 확인 조사)

- 슬레이트 처리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 분석 및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아.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 우수(82.7점)

자.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부서의견

- 슬레이트의 주성분인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처리 시 작업장 위험요소(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석면 노출)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취약계층의 지붕개량까지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기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이 필요함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위탁운영 현황

위탁기간	위탁기관	위탁예산	비고
2012년 ~ 2016년 [5년]	한국환경공단	‘12년) 96백만원 ‘13년) 36백만원 ‘14년) 388.8백만원 ‘15년) 672백만원 ‘16년) 672백만원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위탁 → ‘17년 개정되어 해당법 조항 삭제
2017년 ~ 2023년 [7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17년) 772.8백만원 ‘18년) 872.84백만원 ‘19년) 685.28백만원 ‘20년) 1,240.04백만원 ‘21년) 962.6백만원 ‘22년) 846.7백만원 ‘23년) 971.4백만원	공개모집 / 2년마다 위탁 (‘17년 제외) ※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슬레이트 건축물 용도별 현황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 자료)

구분	계	주택	축사	창고	공장	기타 (상가, 종교, 근린)
수량(동)	6,941	5,560	651	449	110	171
슬레이트면적(m ²)	807,577	*조사제외	356,630	137,965	246,897	34,595

○ 슬레이트 건축물 읍·면·동별 현황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 자료)

구분	계	선산	고아	장천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동지역
수량(동)	6,941	1,175	1,109	442	717	600	703	1,046	360	789

□ 연도별 지원실적

○ 주택 : 5,560동 중 2,427동 철거완료(43.6%)

○ 비주택(축사, 창고) : 1,100동 중 191동 철거완료(17.3%)

구분		예산(백만원)		계획 동수	실적 동수	실적율	가구당 지원금액	처리단가 (㎡)	처리가능 면적(㎡)
계	철거	9,057.66	7,563.56	2,319	2,618				
	개량		1,494.1	318	188				
2021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용역 - 6,941동 중 2,618동 처리(37.7%)									
2012	철거	96	96	48	48	100%	200만원	17,282원	106.47
2013	철거	336	336	140	131	90%	240만원	16,850원	131.04
2014	철거	486	388.8	135	175	130%	288만원	16,774원	157.95
	개량		97.2	19	3	16%	500만원	48,179원	95.47
2015	철거	816	672	200	287	144%	336만원	16,029원	192.85
	개량		144	29	25	86%	500만원	48,704원	94.44
2016	철거	822	672	200	256	128%	336만원	15,674원	197.21
	개량		150	30	18	60%	500만원	49,328원	93.25
2017	철거	922.8	772.8	230	265	115%	336만원	16,339원	189.19
	개량		150	30	31	103%	500만원	52,089원	88.31
2018	철거	872.84	722.84	215	272	127%	336만원	18,845원	178.3
	개량		150	30	21	70%	500만원	54,511원	84.38
2019	철거	685.28	564.48	168	218	130%	336만원	19,482원	158.66
	개량		120.8	40	11	28%	302만원	50,815원	54.67
2020	철거(주택)	1,240.04	860	250	289	116%	344만원	21,218원	149.15(45평)
	철거(비주택)		123.84	72	73	101%	172만원	21,218원	74.57(23평)
	개량		256.2	60	38	63%	427만원	51,415원	53.68(16평)
2021	철거(주택)	962.6	688	200	220	110%	344만원	24,881원	138.25(42평)
	철거(비주택)		137.6	65	56	86%	688만원	24,881원	200(60평)
	개량		137	25	18	72%	610만원	55,236원	110.43(33평)
2022	철거(주택)	846.7	542	154	157	102%	352만원 (우선 전액)	25,198원	139.69(42평)
	철거(비주택)		172.8	32	45	140%	540만원	25,198원	200(60평)
	개량		131.9	30	19	63%	300만원 (우선 1,000만원)	66,226원	45(13.6평) 우선 151(47.8평)
2023 (8월까지)	철거(주택)	971.4	598.4	170	109	64%	352만원* (우선 전액)	26,407원	133.29(40평)
	철거(비주택)		216	40	17	43%	540만원	26,407원	200(60평)
	개량		157	25	4	16%	300만원 (우선 1,000만원)	63,152원	47.5(14.4평) 우선 158(47.8평)

* (주택) 소규모 우선 철거 후 동당 철거금액 최대 7,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도내 지자체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현황

('23년 기준)

시·군·구	물 량(동)				민간위탁 여부 (위탁기간)
	합 계	해체·처리		지붕개량	
		주 택	비주택		
포항시	545	500	45	35	위탁(3년)
경주시	339	300	39	25	위탁(1년)
김천시	416	377	39	35	위탁(3년)
안동시	396	357	39	40	위탁(3년)
구미시	210	170	40	25	위탁(2년)
영주시	315	250	65	25	위탁(2년)
영천시	218	200	18	16	위탁(1년)
상주시	449	410	39	35	부
문경시	448	410	38	35	위탁(2년)
경산시	184	160	24	23	위탁(2년)
의성군	374	350	24	23	위탁(3년)
청송군	165	150	15	23	위탁(3년)
영양군	125	115	10	10	위탁(2년)
영덕군	170	155	15	15	위탁(2년)
청도군	344	325	19	20	위탁(2년)
고령군	205	190	15	10	위탁(3년)
성주군	183	160	23	7	위탁(3년)
칠곡군	145	130	15	15	위탁(2년)
예천군	439	400	39	100	위탁(3년)
봉화군	315	300	15	20	부
울진군	220	200	20	15	위탁(2년)
울릉군	7	7	0	3	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 1월)

Ⅲ. 사업추진 절차 중 사업추진방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사업비 및 위탁 수수료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5년간의 비용추계이며, 위탁 수수료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의 8%로 산정

[참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023. 1.)

Ⅲ-1-5. 위탁(사업자)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

- 위탁수수료는 지급요율을 8% 이내에서 지급하고, 그 외 지급 기준(집행액, 철거 가구당 등)·방법, 위탁내용·범위, 예외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지급 (단,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요율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추후 수수료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자와 계약 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국비(균특)	498,060	533,260	541,360	560,200	577,800	2,710,680
	○ 도비	149,418	159,978	162,408	168,060	173,340	813,204
	소계(a)	647,478	693,238	703,768	728,260	751,140	3,523,884
세출 (b)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996,120	1,066,520	1,082,720	1,120,400	1,155,600	5,421,360
□ 총 비용(a-b)		-348,642	-373,282	-378,952	-392,140	-404,460	-1,897,476

4. 재원조달 방안 :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국비(균특)	498,060	533,260	541,360	560,200	577,800	2,710,680
도비	149,418	159,978	162,408	168,060	173,340	813,204
시비	348,642	373,282	378,952	392,140	404,460	1,897,476
합계	996,120	1,066,520	1,082,720	1,120,400	1,155,600	5,421,36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김은향(☎480-529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4년 기준)

구분		지원금액	물량(동)	금액	비고
슬레이트 철거	주택	3,238,400원	200	647,680,000원	
	비주택	4,968,000원	32	158,976,000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5,777,600원	19	109,774,400원	
위탁수수료 (8%)				79,689,600원	
합계				996,120,000원	

※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업물량 변동 가능

소 관 부 서		환경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손 양 숙
	팀 장	김 현 주
	담 당 자	김 은 향 (480-5292)